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단량체)로 분해한 다음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후 다시 중합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이하 “재생원료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정받으려는 원료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대한 자료
2. 재생방법, 재생공정, 재생공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
3. 재생공정 중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자료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7) 전단 중 “「주세법」 제51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별표 14 제4호라목 단서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은 아래와 같이 한다.

품목의 특성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영양성분 조절제품 []경도 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없음		
▪ 기능성표시식품의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살균·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의 해당여부	[]에	[]아니오	

별지 제43호서식 뒷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5			30		
----	--	--	----	--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성분 기입 방법 : 총 내용량(1포장)당 [], 100g(ml)당 [], 단위내용량당 []

No.	영양성분	단위	No.	영양성분	단위
1	총내용량 또는 100g(ml) 또는 단위내용량	g(ml)	6	지방	g
2	열량	kcal	7	트랜스지방	g
3	나트륨	mg	8	포화지방	g
4	탄수화물	g	9	콜레스테롤	mg
5	당류	g	10	단백질	g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를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의 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신청자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조시설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투입원료 공급원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내용	제품명		재질명	
	재생과정 명칭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인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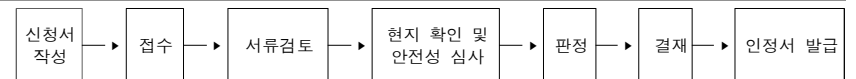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대한 자료 2. 재생방법, 재생과정, 재생공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 3. 재생과정 중 오염물질이 제거됨을 입증하는 자료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인정받으려는 원료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생원료 인정 제 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제 품 명			재 질 명		
재 생 공 정 명 칭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조시설 소재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적합여부					
유효기간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사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u> <u>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u>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란 합성 수지를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 해 원료물질(단량체)로 분해한 다음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 수하게 정제한 후 다시 중합하 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 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이하 “재생원료인정”이라 한다)을 신 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정받으려는 원료와 함께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u>대한 자료</u> 2. 재생방법, 재생공정, 재생공 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 <u>료</u> 3. 재생공정 중 오염물질 제거 <u>에 관한 자료</u>

	<u>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u> <u>기준 및 규격 적합성 등을 판</u> <u>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자료</u> <u>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u> <u>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한</u> <u>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u> <u>청인에게 기구 및 용기·포장의</u> <u>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u> <u>한다.</u>
--	--